

2026

한국국토정보공사(공통) 공간정보법

엠북 공공기관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고득점용, 최근 법령 개정 반영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 ★ 51분 완성

도서명 : 공간정보법

ISBN : 979-11-7393-279-3

발간일 : 2026-06-24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8,000원



공간정보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5)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p12)

제3장 삭제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p30)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p67)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p80)

제7장 벌칙(p99~101)

[약어/용어]

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중앙기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관청은 지적소관청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기관별 기본계획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기관별 시행계획은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목록정보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붉은색은 시행예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가) 법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종합적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 국토/자원을 합리적 이용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나) 대통령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공간정보

-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나. 기본공간정보(26년 12월 3일 시행)

-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고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 융복합, 활용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적 공간정보로 장관이 관보에 고시

다.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DB**)

- 공간정보를 체계적 정리해 사용자가 검색/활용하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

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26년 12월 3일 시행, 이하 기본DB)

- 기본공간정보 구축/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기본공간정보를 정리해 구축한 DB

마. 공간정보체계

- 공간정보를 효과적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도록 유기적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자원의 결합체

바. 관리기관

-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장관이 중앙기관장과 시도지사 및 협의회 고시하는 다음 민간기관

- 1)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 2) 도시가스사업자로서, 허가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3)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 4)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자

사. 국가공간정보체계

-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

아.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통합체계)

- 기본 DB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연계해 장관이 구축/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

자. 공간객체등록번호

- 공간정보를 효율적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

3.

가) 국가/지자체는

-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해 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공개해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노력

나) 국민은 관리기관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정당한 절차 거쳐 활용할 권리 가짐

- 예외: 법령에 따라 공개/이용 제한시

4. 공간정보 취득/관리의 기본원칙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해,

- 기본계획,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공간정보 취득/관리,

- 통합체계 구축시

- 국토의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를 균형있게 포함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없으면 법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5~11조

1.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

가. 위원회

1) 설치

가) 국토부에 둔다

-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나) 심의 사항

a) 국가공간정보정책

- 기본계획, 시행계획(기관별 시행계획 포함)
수립/변경, 집행실적 평가

b) 공간정보 활용 촉진, 유통, 보호

c) 국가공간정보체계

- 중복투자 방지 등 투자 효율화

- 구축/관리/활용 주요 정책 조정

d) 기본공간정보 선정/구축/관리(26년 12월
3일 시행)

e)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성

가) 위원장 포함해 30인 내

- 위원장은 장관

나) 위원

a)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는 다음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 (재교과/ 국행농/ 산기해) 재정경제부 1차관,

교육부차관, 과기부 2차관, 국방차관,

행안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업부 1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해수부차관

- (국소국/농산) 국가데이터처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b) 지자체장(시도는 부시장/부지사)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c) 공간정보체계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촉시 중앙기관장

의견 청취 가능

다) 간사: 2명

- 국토부와 행안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중 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각각

지명